

[별지 제57호서식의(가)] (표 지) (규칙 제106조제2항·제134조 관련)

년 월 일 실시 ○○선거

개 표 록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주 :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란 밑에 "(제1개표소)", "(제2개표소)" 등으로 기재한다.

(내 지)

1. 개표관리상황

가. 개 표 소 설치장소	(구·시·군) (읍·면·동) 리 번지 (장소 :)
나. 위 원 참 석상황	별지 제1호<위원 참석상황>과 같음
라. 개표참관인 참관상황	별지 제2호<개표참관인 참관상황>과 같음

2. 개표상황

가. 개 표 시 간	총 투표합수	개시시각	종료시각
나. 투표용지 교 부수와 투표수 대조상황	별지 제3호<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와 같음		
다. 개 표 결 과	별지 제4호<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조서>와 같음		
라. 특 기 사 항	별지 제5호<개표진행 중의 특기사항>과 같음		

이 개표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년 월 일

작성자(직위) ○○○ (인)
확인자 사무국장(사무과장) ○○○ (인)

이 개표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함.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위원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위원 ○○○
사유 :

년 월 일

위원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 주 : 1. 이 개표록은 선거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구·시·군위원회가 있는 경우의 선거(동시선거 포함)에 있어서 개표사무를 관리하는 각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한다.
2. 이 서식에 기재된 사항외에 개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별지>로 작성하며, 이 서식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3. 끝부분에는 위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되, 개표소를 2개소에 설치하여 보조위원을 둔 때에는 "위원"을 "보조위원"이라 기재한다.
4. 개표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위원장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
5. 이 개표록은 2통을 작성한다. 다만, 동시선거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선거의 개표록을 함께 작성하는 때에는 선거마다 1통씩을 추가 작성한다.

<별지 제1호>

위원참석상황

직 위	성 명	근 무 시 간		비 고
		부 터	까 지	

<별지 제2호>

개표참관인참관상황

구 분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	참관인 성명	참관시간 (부터까지)	비고
정당선정				
무소속후보자 선정				
위원회선정				

- 주 : 1. 교체된 개표참관인은 "비고"란에 "○○○과(와) 교체"라 기재하되, 참관도중에 교체한 때에는 그 교체시각을 기재한다.
2.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동시선거에 있어서 무소속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선거명 또는 선거구명을 기재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에서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작성한다.
4. 교대참관을 하는 경우에는 "참관시간"란에 구분선을 그어 그 참관시간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

투표구명	투표합수	투표용지 교부수	투표수	투표용지교부수가 투표수보다		비고
				많음(매)	적음(매)	
합계						

- 주 : 1. 투표수를 기준으로 하여 투표용지교부수의 많음·적음을 산정한다.
2. 사전투표 및 거소·선상투표는 "투표구명"란에 "사전투표(관내·관외) 및 거소·선상투표"로 기재하고, "투표용지교부수"란에 관외 사전투표 및 거소·선상투표는 "거소투표 등 발송·접수록의 접수수"를,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용지 교부수"를 기재한다.
3.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구명"란에는 사전투표 및 거소·선상투표는 "사전투표(관내·관외) 및 거소·선상투표"로, 재외투표는 "재외투표"로 기재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및 거소·선상투표는 "사전투표(관내·관외) 및 거소·선상투표"로, 재외투표는 "국외부재자투표"로 기재하되, "투표용지교부수"란에 관외 사전투표 및 거소·선상투표는 "거소투표 등 발송·접수록의 접수수"를,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용지 교부수"를, 재외투표는 "재외투표 발송·접수록에 의한 접수수"를 기재한다.
4.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투표구명"을 "읍·면·동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
5.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투표구명"란 앞에 "선거구명"란을 설치하고 선거구단위로 "합계"란을 두되, 읍·면·동 단위로 "소계"란을 둔다.
6.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별로 작성한다.
7.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에서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작성한다.

<별지 제4호>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조서

투표 구명	선거인수 (가+나+다)	투표수 (가+나)	유효투표수(가)				무효 투표수 (나)	기권수 (다)	비고
			후보자별 득표수						
			○○당	○○당	무소속	계			
			○○○	○○○	○○○				
잘못 투입 된투표지									
계									

- 주 : 1.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투표구명"란 앞에 "선거구명"란을 설치하고 선거구단위로 "합계"란을 두되, 읍·면·동 단위로 "소계"란을 둔다.
2.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구명"란에는 사전투표 및 거소·선상투표는 "사전투표(관내·관외) 및 거소·선상투표"로, 재외투표는 "재외투표"로 기재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및 거소·선상투표는 "사전투표(관내·관외) 및 거소·선상투표"로, 재외투표는 "국외부재자투표"로 기재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정당별 득표수"로 하고, "○○당 ○○○"를 "○○당"으로 한다.
4. "선거인수"란에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선거인수에서 사전투표자수와 확정된 거소·선상투표신고인수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뺀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5.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투표구명"을 "읍·면·동명"으로 기재한다.
6. "잘못 투입된 투표지"란은 동시선거의 경우에 작성하며,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있는 때에 그 개표상황을 기재한다.
7.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별로 작성한다.
8.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에서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작성한다.

개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1. 개표진행에 관한 시정요구 및 조치내용

일 시	시 정 요 구 자		시정요구내용	조 치 내 용
	신 분	성 명		

2.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함의 봉쇄·봉인의 검사의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

구 분	참 관 인		
	정당·후보자명	성 명	사 유
봉쇄·봉인검사			

3. 그 밖의 특기사항

년 월 일 실시 ○○선거

선거록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내 지)

1. 위원회의 개최장소 :
2. 위원회의 개최일시 : 월 일 시 분
3. 선거결과 집계상황

선거명	선거구명	총선거인수 (가+나)	총 투표 수 (가)			기권수 (나)	비 고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계		

4. 후보자별 득표상황

선거명	선거구명	후 보 자		득 표 수	비 고
		소 속 정 당 명	성 명		

5. 당선인 결정상황

선거명	선거구명	당 선 인		결정근거	비 고
		소 속 정 당 명	성 명		

(결정 근거는 "1위득표자", "2위득표자", 또는 "무투표당선" 등으로 기재함)

6. 당선인을 결정하지 못한 (선거명)·(선거구명)과 그 사유

선거명	선거구명	사유	비고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작 성 자 (직 위) ○○○ (인)

확인자 사무국장(사무과장) ○○○ (인)

이 선거록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함.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위원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위 원 ○○○

사 유 :

년 월 일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주

1. 이 선거록은 구·시·군위원회가 선거구위원회이고, 선거구위원회안에 2 이상의 구·시·군위원회가 있는 경우의 선거(동시선거 포함)시에 사용한다.
2. 이 서식에 기재된 사항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며, 이 서식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3. 끝부분에는 위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선거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위원장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쪽 사이에 간인한다.
5. 이 선거록작성의 근거가 된 개표록은 이 선거록 뒤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년 월 일 실시 ○○선거

개표 및 선거록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내 지)

1. 위원회의 개최장소:

2. 위원회의 개최일시: 월 일 시 분

3. 개표관리상황

가. 개 표 소 설 치 장 소	(구·시·군)	(읍·면·동)	리	번지
	(장소 :	)		
나. 위 원 참 석 상 황	별지 제1호<위원 참석상황>과 같음			
다. 개표참관인 참 관 상 황	별지 제2호<개표참관인 참관상황>과 같음			
라. 개표상황	①개표시간	총투표합수	개시시각	종료시각
	②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 상황	별지 제3호<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 서>와 같음		
	③개 표 결 과	별지 제4호<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조 서>와 같음		
	④특 기 사 항	별지 제5호<개표진행 중의 특기사항>과 같음		

4. 당선인 결정상황

선 거 명	선 거 구 명	당 선 인		결정근거	비 고
		소 속 정 당 명	성 명		

(결정 근거는 "1위 득표자", "2위 득표자", 또는 "무투표 당선" 등으로 기재함)

5. 당선인을 결정하지 못한 (선거명)·(선거구명)과 그 사유

선 거 명	선 거 구 명	사 유	비 고

이 개표 및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년 월 일

작 성 자 (직 위) ○○○ (인)

확인자 사무국장(사무과장) ○○○ (인)

이 개표 및 선거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함.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위원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위 원 ○○○

사 유 :

년 월 일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주

1. 이 개표 및 선거록은 선거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 선거구위원회가 아닌 구·시·군위원회가 없는 경우의 단일선거 또는 보궐선거 등의 동시선거시에 사용한다.
2. 이 서식에 기재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며, 이 서식 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3. 끝부분에는 위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개표 및 선거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위원장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
5. 이 서식의<별지 제1호> 내지<별지 제5호>의 서식은 이 호 서식의(가)에 의한 개표록서식의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의(라)] <개정 2020. 1. 17.> (표 지)
 년 월 일 실시 (대통령)·(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

집 계 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내 지)

- 위원장은 월 일 시 분부터 (○○장소)에서 집계사무의 개시를 선포 하였음
- 개표록에 의하여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대통령선거용)
 가. 집계결과

① 총선거인수		인
② 투표용지교부수		매
③ 총투표수	유효투표	표
	무효투표	표
	계	표
④ 대조결과		[투표용지교부수와 총투표수가 부합함]·[투표용지교부수가 총투표수보다 ○○매 (많음)·(적음)]
⑤ 기권수		인

나. 각 후보자의 득표수는 다음과 같음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득표수	비고
○ ○ 당	○ ○ ○	표	
○ ○ 당	○ ○ ○	표	
무 소 속	○ ○ ○	표	
계		표	

다. 위원장은 집계사무가 완료되었으므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였으며,
 그 상황은 별지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집계조서>와 같음

- 개표록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집계결과 및 선거록(개표및선거록)
 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상황은 다음과 같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집계결과

(1) 집계결과

① 총선거인수		인
② 투표용지교부수		매

③ 총투표수	유효투표	표
	무효투표	표
	계	표
④ 대조결과		[투표용지교부수와 총투표수가 부합함]·[투표용지교부수가 총투표수보다 ○○매 (많음)·(적음)]
⑤ 기권수		인

(2)정당별 득표수

정 당 명	득 표 수	비 고
○ ○ 당	표	
○ ○ 당	표	
○ ○ 당	표	
계	표	

(3) 위원장은 집계사무가 완료되었으므로 정당별 득표수를 공표하였으며,
그 상황은 별지<정당별 득표수 집계조서>와 같음

(4) 재투표사유가 발생한 투표구명과 그 선거인수

투 표 구 명	선 거 인 수	사 유	비 고
	인		
	인		
계	인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당선인 결정상황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법 제196조 및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연기 또는 재투표사유가 발생되어 당선인을 결정하지 못한 지역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지역구수 : 개

지역구명 :

(2) 정당별 당선인수는 다음과 같음

지역구수	정당별 당선인 수				무소속후보자의 당 선 인 수	비 고
	○○당	○○당	○○당	계		

4. 월 일 시 분 집계사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위원장은 집계록 2통을 작성하여 이를 낭독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위원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위 원 ○○○

사 유 :

년 월 일

위 원 장	○○○	(인)
상임위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주

1. 위의 서식에 기재된 사항외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서식중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2. 끝부분에는 위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집계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위원장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
4. "2항"은 해당선거에만 작성하고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생략하며, "2항" 중 "대통령선거용"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용"이란 용어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5. 이 집계록에는 작성근거가 된 개표록(선거록, 개표및선거록)을 합철하여 관리한다.

<별 지> (대통령선거용)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집계조서

[illegible]

주

1. 사전투표수, 거소·선상투표수, 재외투표수(국외부재자투표수+재외선거인투표수)는 투표수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따로 그 수를 ()안에 사전투표수, 거소·선상투표수, 재외투표수 순으로 기재한다.
2. 투표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한다.

<별 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용)

정당별 득표수 집계조서

구 · 시 · 군위원회 명	선거인수 (가+나 +다)	투표수 (가+나)	유효투표수(가)						무효 투표 수 (나)	기 권 수 (다)	투 표 율 (%)	비 고
			정 당 별 득 표 수									
			○ ○ 당	○ ○ 당	○ ○ 당	○ ○ 당	○ ○ 당	계				
계												

주

1. 사전투표수, 거소·선상투표수, 재외투표수(국외부재자투표수+재외선거인투표수)는 투표수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따로 그 수를 ()안에 사전투표수, 거소·선상투표수, 재외투표수 순으로 기재한다.
2. 투표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한다.

년 월 일 실시 (대통령)·(시·도지사)선거

선 거 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내 지)

1. 위원장은 월 일 시 분(○○장소)에서 당선인결정 및 선거록작성을 위한 위원회의의 개회를 선언하였음

2. 집계상황

가.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총선거인수		인
② 투표용지교부수		매
③ 총투표수	유효투표	표
	무효투표	표
	계	표
④ 대조결과	[투표용지교부수와 총투표수가 부합함]·[투표용지교부수가 총투표수보다 ○○매 (많음)·(적음)]	
⑤ 기권수		인

나. 각 후보자의 득표수는 다음과 같음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득표수	비고
○ ○ 당	○ ○ ○	표	
○ ○ 당	○ ○ ○	표	
무 소 속	○ ○ ○	표	

다. 위원장은 집계사무가 완료되었으므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였으며, 그 상황은 별지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집계조서>와 같음

3. 당선인결정상황

가. 우리 위원회는 다음의 자를 당선인으로 의결하였음

당선인 소속정당명

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

당선인결정근거

나. 다음과 같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므로(이를 국회에 통보하기)·(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의결하였음

○○당 ○○○ 표

무소속 ○○○ 표

다. [후보자가 1인으로서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투표자) 총수의 3분의1
이 되지 아니하므로]·[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투표마감
시각후에 (사퇴)·(사망)·(등록무효)하여(되어) 당선인이 될 수 없으므로]
당선인이 없음을 의결하였음

4. 월 일 시 분 당선인결정에 관한 사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위원
장은 이 선거록을 작성하여 낭독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였음. 다만, 당선인결정의 의결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위원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위 원 ○○○

사 유 :

년 월 일

위 원 장 ○○○ (인)

상임위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주

1. 위의 서식에 기재된 사항외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를 <별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서식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는 선
을 그어 생략하되, "3항"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2. 끝부분에는 위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선거록은 대철(별치 포함)한 후 위원장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 부분에 날인
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

<별 지>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집계조서

(시·도 명) 구· 시·군명	선거인수 (가+나 +다)	투표수 (가+나)	유효투표수(가)				무효 투표 수 (나)	기 권 수 (다)	투 표 율 (%)	비 고
			후보자별 득표수							
			○○당	○○당	무소속	계				
			○○○	○○○	○○○					
합 계										

주

1.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전투표수, 거소·선상투표수, 재외투표수(국외부재자투표수+재외선거인투표수)는 투표수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따로 그 수를 ()안에 사전투표수, 거소·선상투표수, 재외투표수 순으로 기재한다.
2.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사전투표수, 거소·선상투표수는 투표수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따로 그 수를 ()안에 기재한다.
3.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시·도명)"으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구·시·군명)"으로 한다.

년 월 일 실시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

선 거 록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내 지)

1. 위원장은 년 월 일 시 분 (○○장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의석배분과 당선인 결정 및 선거록 작성을 위한 위원회의의 개회를 선언하였음.

2. 집계상황

가.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총선거인수		명
② 투표용지교부수		매
③ 총투표수	유효투표	표
	무효투표	표
	계	표
④ 대조결과	[투표용지교부수와 총투표수가 부합함]·[투표용지교부수가 총투표수보다 ○○매 (많음)·(적음)]	
⑤ 기권수		명

나. 각 정당별 득표상황은 별지 제1호<정당별 득표수 집계조서>와 같음.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별 당선인의 수는 별지 제2호<정당별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집계조서>와 같음.

라.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투표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투 표 구 명	선 거 인 수	비 고
	명	
	명	
	명	
계	명	

마.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법 제196조·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연기 또는 재투표 사유가 발생되어 당선인을 결정하지 못한 지역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지역구수 : 개

지역구명 :

바. 법 제196조·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 또는 재투표 결과에 따라 의석할 당정당이 될 수 있는 정당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을 득표하였으나 그 정당의 득표수에 '라'의 선거인수를 합하면 그 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될 수 있는 정당

정 당 명	득 표 율	비 고
당	%	

당	%
---	---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차지한 의석이 5석에 미달하나 그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에 '마'의 지역구수를 합하면 그 수가 5석 이상에 해당되어 의석할당정당이 될 수 있는 정당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정 당 명	의 석 수	비 고
당		
당		

사. 위원장은 집계사무가 완료되었으므로 별지 제1호<정당별 득표수 집계조서>에 의하여 정당별 득표수를 공표하였음.

3.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상황

가. 정당에 배분할 수 있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는 다음과 같음.

- (1)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석
- (2)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배분하기 위하여 남겨두는 의석수 석
비례대표 의석정수×(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투표구의 선거인수/전국선거인수)
- (3)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합하면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는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연기 또는 재투표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지역구수를 합하면 그 의석수가 5석이상이 되는 정당을 위하여 남겨두는 의석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3/100)×(2. 집계상황 '바'의 추가 배분대상 정당수)
- (4) 배분할 수 있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 석

나. 각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결과 및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는 다음과 같음.

- (1) 각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결과는 다음과 같음.

정 당 명	득 표 수	득 표 율	비 고
당	표	%	
당	표	%	
당	표	%	
계	표	100%	

- (2) 각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당선인수는 다음과 같음.

정 당 명	당 선 인 수	비 고
당		
당		
당		
계		

- (3) 의석할당정당은 다음과 같음: ○○당, ○○당, ○○당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의석할당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이 얻은 총득표수로 나누어 산출한 득표비율은 다음과 같음.

정 당 명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득표비율(해당 정당의 득표수/의석할당정당의 총득표수)	비 고
-------	---------------	-------------------------------	-----

당	표	
당	표	
당	표	
계	표	

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상황은 다음과 같음.

-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였음.

구분 정당명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	득표비율 (해당 정당의 전국 득표수/모든 의석할 당정당의 전국득표 수)	연동배분 의석수	잔여배분 의석수	조정 의석수	총배분 의석수
당	표		석	석	석	석
당	표		석	석	석	석
당	표		석	석	석	석
계	표		석	석	석	석

- (가) 의석할당정당에 의석을 배분하기 위하여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고 1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 연동배분의석수는 다음과 같음.

정 당 명	$[(\text{국회의원정수}-\text{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times \text{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text{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div 2$
당	석
당	석
당	석
계	석

- (나)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할 잔여배분의석수는 다음과 같음.

정당명	$(\text{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 - \text{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times \text{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당	석
당	석
당	석
계	석

주: 정수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 추첨

- (다)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조정의석수를 각 연동배분의석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함.

$$\text{조정 의석수} = \text{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 \times \text{연동배분의석수} \div \text{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주: 정수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 추첨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와 같으므로)(보다 적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음)(다음과 같이 배분하고 나머지 ○석은 공석으로

하였음).

정 당 명	의 석 수	비 고
당		
당		
당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없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지 아니하였음.

4. 당선인 결정상황

가. 우리위원회는 별지 제3호<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명단>과 같이 당선인을 결정하였음.

나. ○○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는 ○○석이나 ○○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 ○○명을 초과하므로 ○석은 공석으로 하였음.

5. 년 월 일 시 분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배분과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위원장은 이 선거록을 낭독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 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음.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위원과 그사유는 다음과 같음.

위 원 ○○○

사 유 :

년 월 일

위 원 장 ○○○ (인)

상임위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주: 1. ‘2. 집계상황 바’ 및 ‘3.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 상황 가. (3)’에서 5석 이상에 해당될 정당의 의석수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정하고, 재투표의 경우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득표수에 재투표대상 투표구의 전체 선거인수를 합하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위의 서식에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른 때에는 그 사실대로 정정 기재하여야 한다.

3. 위의 서식에 기재된 사항 외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서식 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생략한다.

4. 끝부분에는 위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5. 선거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위원장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

<별지 제1호>

정당별 득표수 집계조서

시·도 위원회명	유효투표 총수	정당별득표수			비고
		○○당	○○당	○○당	
계					
득표율					

<별지 제2호>

정당별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집계조서

시·도 위원회명	지역구수	정 당 별 당 선 인 수				무소속 후 보자의 당선인수	비 고
		○○당	○○당	○○당	계		
계							

<별지 제3호>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명단

소속정당명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순위	당선인성명	비고

년 월 일 실시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선거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내 지)

1. 위원장은 월 일 시 분 (○○장소)에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의석배분과 당선인결정 및 선거록 작성을 위한 위원회의의 개회를 선언하였음
2. 집계상황
 - 가.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총선거인수		인
② 투표용지교부수		매
③ 총투표수	유효투표	표
	무효투표	표
	계	표
④ 대조결과		[투표용지교부수와 총투표수가 부합함]·[투표용지교부수가 총투표수보다 ○○매 (많음)·(적음)]
⑤ 기권수		인

나. 각 정당별 득표상황은 별지 제1호<정당별 득표수 집계조서>와 같음
다. 재투표사유가 발생한 투표구

투표구명	선거인수	인
투표구명	선거인수	인

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득표하였으나 그 정당의 득표수에 "2항 다호"의 재투표사유가 발생한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합하면 그 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인 되어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의석할당정당이 될 수 있는 정당명 및 그 득표수는 다음과 같음

○○당	표
○○당	표

마. 위원장은 집계사무가 완료되었으므로 별지 제1호<정당별 득표수 집계조서>에 의하여 정당별 득표수를 공표하였음

3.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배분상황은 다음과 같음

가. 정당에 배분할 수 있는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수는 다음과 같음

- (1)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정수 석
 (2) 추가 배분을 위하여 남겨두는 의석수 석
 (가) 재투표사유가 발생한 투표구의 선거를 실시한 후 배분하기 위하여
 남겨두는 의석수 석

$$\text{비례대표 의석정수} \times \frac{\text{재투표사유가 발생한 투표구의 선거인수}}{\text{총선거인수}}$$

- (나) 재투표사유가 발생한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합하면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정당을 위하여 남겨두는 의석수 석

$$\text{비례대표 의석수} \times \frac{5}{100} \times \text{"2항 라호"의 추가 배분대상 정당수}$$

- (3) 배분할 수 있는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수

나.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각 정당의 득표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의석할당정당(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얻은 정당을 말함)을 가리기 위한 각 정당의 득표율상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득 표 수	득 표 율	비 고
정 당 별	○ ○ 당	표	%	
	○ ○ 당	표	%	
	○ ○ 당	표	%	
합 계		표	100%	

- (2) 의석할당정당에 의석을 배분하기 위하여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의석할당정당이 얻은 총득표수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분	○○당	○○당	○○당	계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표	표	표	표
득표비율 = $\frac{\text{해당정당의 득표수}}{\text{의석할당정당의 총득표수}}$				1

다.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배분상황은 다음과 같음

- (1) 의석할당정당에 해당하는 정당은 ○○당·○○당·○○당이고,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이 없으므로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을 배분하였음

구 분 \ 정당명	○○당	○○당	○○당	계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표	표	표	표
득표비율 = $\frac{\text{해당정당의 득표수}}{\text{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계}}$				1
득표비율에 따라 산출된 의석배분 기준수 =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수 × 득표비율				
정수에 따른 배분 의석수	석	석	석	석
단수에 따른 배분 의석수	석	석	석	석
단수가 같은 경우의 배분 의석수	석	석	석	석
총배분 의석수	석	석	석	석

(2) (의석할당정당에 해당하는 정당은 ○○당·○○당·○○당이고,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이 배분되므로)(의석할당정당에 해당하는 정당이 ○○당 하나 뿐이며,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다음과 같이 비례대표시·도 의원 의석을 배분하였음

(가)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였음

(나) 위 (가)에 의하여 배분하고 남은 의석 ○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의석할당정당이 없으므로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나머지 정당)에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음

구 분 \ 정당명	○○당	○○당	○○당	계
잔여의석 할당정당의 득표수	표	표	표	표
득표비율 = $\frac{\text{해당정당의 득표수}}{\text{잔여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계}}$				1
득표비율에 따라 산출된 의석배분 기준수 = 배분할 잔여의석수 × 득표비율				
정수에 따른 배분 의석수	석	석	석	석
단수에 따른 배분 의석수	석	석	석	석
단수가 같은 경우의 배분 의석수	석	석	석	석
총배분 의석수	석	석	석	석

(주 :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때에는 "의석할당정당"은 "나머지 정당"임)

(3)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 하나뿐이므로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을 전부 ○○당에 배분하였음

(4)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수가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정수(와 같으므로)(보다 적으므로)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음)(다음과 같이 배분하고 나머지 ○석은 공석으로 하였음)

정 당 명	의 석 수	비 고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없으므로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은 배분하지 아니하였음

4.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의 당선인 결정상황

가. 우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그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하였으며 그 상황은 별지 제2호<비례대표시·도의원 당선인명단>과 같음

나. ○○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수는 ○○석이나 ○○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수 ○○인을 초과하므로 초과하는 ○석은 공석으로 하였음

5. 년 월 일 시 분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배분과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위원장은 이 선거록을 낭독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음.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위원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위 원 ○○○

사 유 :

 년 월 일

- 위 원 장 ○○○ (인)
- 상임위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주

1. 위의 서식에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른 때에는 그 사실대로 정정 기재한다.

2. 위의 서식에 기재된 사항외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로 작성하며, 이 서식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3. 끝부분에는 위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선거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위원장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

<별지 제1호>

정당별 득표수 집계조서

구·시·군 위원회명	유효투표총 수	정 당 별 득 표 수				비 고
		〇〇당	〇〇당	〇〇당	계	
계						
득 표 율						

<별지 제2호>

비례대표시·도의원당선인 명단

소 속 정 당 명	후보자명부의 순위	당 선 인 성 명	비 고

선 거 록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내 지)

1. 위원장은 월 일 시 분(○○장소)에서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선거의 의석 배분과 당선인 결정 및 선거록 작성을 위한 위원회의의 개회를 선언하였음

2. 집계상황

가.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총선거인수		인
② 투표용지교부수		매
③ 총투표수	유효투표	표
	무효투표	표
	계	표
④ 대조결과		[투표용지교부수와 총투표수가 부합함]·[투표용지교부수가 총투표수보다 ○○매 (많음)·(적음)]
⑤ 기권수		인

나. 각 정당별 득표상황은 별지 제1호<정당별 득표수 집계조서>와 같음

다. 재투표사유가 발생한 투표구

투표구명 선거인수 인

투표구명 선거인수 인

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득표하였으나 그 정당의 득표수에 "2항 다호"의 재투표사유가 발생한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합하면 그 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인 되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의석할당정당이 될 수 있는 정당명 및 그 득표수는 다음과 같음

○○당 표

○○당 표

마. 위원장은 집계사무가 완료되었으므로 별지 제1호<정당별 득표수 집계조서>에 의하여 정당별 득표수를 공표하였음

3.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의석배분상황은 다음과 같음

가. 정당에 배분할 수 있는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의석수는 다음과 같음

- (1)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의석정수 석
 (2) 추가 배분을 위하여 남겨두는 의석수 석
 (가) 재투표사유가 발생한 투표구의 선거를 실시한 후 배분하기 위하여
 남겨두는 의석수 석

$$\text{비례대표 의석정수} \times \frac{\text{재투표사유가 발생한 투표구의 선거인수}}{\text{총선거인수}}$$

- (나) 재투표사유가 발생한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합하면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정당을 위하여 남겨두는 의석수 석

$$\text{비례대표 의석수} \times \frac{5}{100} \times \text{"2항 라호"의 추가 배분대상 정당수}$$

- (3) 배분할 수 있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의석수
 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각 정당의 득표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의석할당정당(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얻은 정당을 말함)을 가리기 위한 각 정당의 득표율상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득 표 수	득 표 율	비 고
정 당 별	○ ○ 당	표	%	
	○ ○ 당	표	%	
	○ ○ 당	표	%	
합 계		표	100%	

- (2) 의석할당정당에 의석을 배분하기 위하여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의석할당정당이 얻은 총득표수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분	○○당	○○당	○○당	계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표	표	표	표
득표비율 = $\frac{\text{해당정당의 득표수}}{\text{의석할당정당의 총득표수}}$				1

- 다.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석을 배분하였음

구 분 \ 정당명	○○당	○○당	○○당	계
득표비율				1
득표비율에 따라 산출된 의석배분 기준 수 =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수×득표비율				
정수에 따른 배분 의석수	석	석	석	석
단수에 따른 배분 의석수	석	석	석	석
단수가 같은 경우의 배분 의석수	석	석	석	석
총 배분 의석수	석	석	석	석

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 하나뿐
이므로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석을 전부 ○○당에 배분하였음

마.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수가 비례
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석정수(와 같으므로)(보다 적으므로)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의석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음)(다음과 같이 배분하
고 나머지 ○석은 공석으로 하였음)

정 당 명	의 석 수	비 고

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없으므로 비례
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석은 배분하지 아니하였음

4.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석의 당선인 결정상황

가. 우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명부에 기
재된 순위에 따라 그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석의 당
선인을 결정하였으며 그 상황은 별지 제2호<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당선인명단>과 같음

나. ○○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석수는 ○○석이나 ○○당
이 추천한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수 ○○인을 초과하므로 초과
하는 ○석은 공석으로 하였음

5. 년 월 일 시 분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석배분과 당선 인 결정에 관한 사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위원장은 이 선거록을 낭독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음.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위원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위원 ○○○

사유 :

년 월 일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주

1. 위의 서식에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른 때에는 그 사실대로 정정 기재한다.
2. 위 서식에 기재된 사항 외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로 작성하며, 이 서식 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3. 끝부분에는 위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선거록은 대철(별지포함)한 후, 위원장이 표지와 끝 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

<별지 제1호>

정당별 득표수 집계조서

읍·면·동 명	투표구명	유효투표 총 수	정 당 별 득 표 수				비 고
			〇〇당	〇〇당	〇〇당	계	
계							
득 표 율						1	

주 : 읍·면·동 단위로 개표하는 경우에는 "투표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당선인 명단

소 속 정 당 명	후보자명부의 순위	당 선 인 성 명	비 고